1. 개정이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(‘20.3.4.)으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·치료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(’20.4.5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입원치료 통지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

라. 기　　타 :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중 “제43조”를 “제42조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제80조 제2호에 따라 300만원”을 “제79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